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에 농어업·농어촌·농수산물 식품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나, 수산분야 별도 분과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아 수산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안건 발굴·논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산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산 분야에 특화된 논의를 실시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를 “농산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 및 수산분과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분과위원회:”를 “농산업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라목 중 “농어업”을 각각 “농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산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남북수산협력에 관한 사항

다. 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u>농어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u> 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 <u>농산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및 수산분과위원회</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 ----- -----.
1. <u>농어업분과위원회</u> : 다음 각 목의 사항	1. <u>농산업분과위원회</u> : ----- -----
가. <u>농어업</u>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가. <u>농산업</u> ----- ----- -----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u>농어업</u> 및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라. <u>농산업</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수산분과위원회</u>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u>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u>

② (생 략)	<u>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u> <u>나. 남북수산협력에 관한 사 항</u> <u>다. 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실 현에 관한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433